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성비위 징계 법관의 동종·유사 사건 제척 등〉

■ 김용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413호)

2026. 5.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김용민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5. 8. 27.
3. 회 부 일: 2025. 8.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법관이 해당 형사사건과 일정한 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재판 수행에 의문을 야기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폭력, 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법관이 그와 동종 또는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재판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성비위 징계처분을 받은 법관이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건과 동종·유사한 사건을 담당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관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성비위로 징계 또는 징계부과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건과 동종·유사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나.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법관에 대하여 사건 당사자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법관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성매매,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 및 징계부과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건과 동종·유사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도록 하고, 위 사유에 해당하는 법관에 대하여 검사 또는 피고인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신설 및 제18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第17條(除斥의 原因) (생략)	第17條(除斥의 原因)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법관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 및 징계부과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징계등 사건과 동종·유사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第18條(忌避의 原因과 申請權者)	第18條(忌避의 原因과 申請權者)
① 檢事 또는 被告人은 다음 境遇에 法官의 忌避를 申請할 수 있다.	① ----- ----- -----.
1. 法官이 前條 各 號의 事由에	1. 법관이 제17조제1항 각 호의

<u>該當되는 때</u>	<u>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 에 해당되는 --</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관이 해당 사건과 일정한 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재판 수행에 의문을 야기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하는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규정함.

제척(除斥)의 경우 법관이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상 당연히 그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제도로써, 현행 제17조¹⁾는 ① 법관이 피해자인 때, ②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인 때, ③ 법정대리인·후견감독인인 때, ④ 증인·감정인·피해자 대리인으로 된 때, ⑤ 피고인의 대리인·변호인·보조인으로 된 때,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⑦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 ⑧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등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1) 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8.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9. 법관이 피고인인 법인·기관·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지나지 아니한 때, ⑨ 피고인인 법인·기관·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를 제척사유로 규정함.

제척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재판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는 기피·회피와 달리 사유만으로 당연히 배제되는 것으로, 제척사유는 열거주의에 따라 명문 규정 이외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유추·확대 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²⁾임.

제척사유가 있는 법원은 해당 사건에 관한 법관으로서의 모든 소송 행위에서 배제되는데, 구체적으로는 기일 지정 등 소송지휘 행위, 증거 조사 등 심리 행위, 공소제기 후의 증거보전 또는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등 당해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에 관여할 수 없고, 해당 법관이 재판에 관여한 때에는 상소이유³⁾가 됨.

다만, 제척 제도가 공소제기 이후의 형사재판 절차를 전제로 하기때문에 공소제기 전의 피의사건 심판에는 제척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⁴⁾

2) 신동운, 『간추린 신형사소송법(제13판)』, 법문사(2021), 431면/ 박준 외 5인, 『이익충돌에 관한 법적 연구』, 박영사(2018년), 102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나17265 판결 손해배상(기)

3) 제361조의5(항소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 ~ 6. (생략)

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8. ~ 15. (생략)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 4. (생략)

4) 이재상, 조권석, 이창은, 『형사소송법(제16판)』, 박영사(2025년), 449-450면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현행 법관의 제척사유는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어, 법관의 개인적 비위 전력이 재판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규정은 없음. 성폭력·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법관이 동종·유사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를 제척사유로 추가함으로써 공정한 재판 및 사법에 대한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은 “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징계등 사건과 동종·유사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종·유사 사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⁵⁾. “동종·유사”라는 개념은 해석에 따라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현행 제척 사유는 열거주의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점에서, “동종·유사 사건”의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징계의 종류(견책, 감봉, 정직)나 수위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제척 효과를 부여하고 있음. 경미한 징계(예: 견책)를 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제척할 것인지를 비례원칙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법관의 제척제도는 법원서기관 등 법원직원 및 통역인(제25조), 전문심리위원(제279조의5) 등에 준용되고 있으므로 동일하게 규율할 것인지 함께 살펴야 하겠음.

5) 예컨대, 성희롱으로 징계받은 법관이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성희롱 사건만을 의미하는지 등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사유별 제척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징계처분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영구적으로 제척 효과가 지속되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현행 제척사유(현행 제17조제8호 및 제9호)를 보면, 피고인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등에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피고인인 법인·기관의 임직원으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등 제척 기간을 함께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척기간 여부 및 기간을 명시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에 대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기존 제척사유와의 부정합성, ‘동종·유사 사건’ 범위의 불명확성의 측면에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063